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8월 6일

CUOMO 행정부, 35개 업체에게 뉴욕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불법 온라인 고금리 단기 소액 대출인 페이데이론(PAYDAY LOANS)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다

대대적인 DFS 수사를 통해 뉴욕 소비자들에게 1,095%의 살인적인 연리 이자로 불법 페이데이론을 제공하는 대부업체들을 적발하다

Cuomo 행정부, 은행 및 NACHA에게 DFS와 함께 페이데이 대부업체의 고객 계좌 접근을 차단하는 일에 나설 것을 요청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자신의 행정부에서 35개 온라인 업체로 하여금 뉴욕 소비자에게 불법 페이데이론 영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뉴욕 금융서비스부(DFS)의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수사로 이들 대부업체들이 연리 1,095%의 살인적인 이율의 일부 대출을 포함해 뉴욕법을 위반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소비자에게 페이데이론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오늘 Benjamin M. Lawsky 금융서비스부 장관이 자동어음교환시스템("ACH")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많은 은행의 대표들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는 117개 은행 및 NACHA에게 DFS와 협조해 불법 페이데이 대부업체의 뉴욕 고객 계좌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페이데이론은 뉴욕의 경우 ACH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 입금 및 인출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Cuomo 행정부는 이들 은행과 NACHA에게 DFS와 협조하여 페이데이 대부업체의 ACH 액세스를 중단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모범적인 안전장치를 구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불법 페이데이 대부업체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상태에 놓여있는 가정들을 상대로 살인적인 고금리와 보이지 않는 수수료로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뉴욕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치명적인 대부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Lawsky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업체들은 사이버 공간 속의 법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수많은 가족들이 파괴적인 사채의 고리에 갇히게 만드는 불법 페이데이 대부 행위를 박멸시킬 것입니다."

Korean

Lawsky 장관은 또한 오늘 뉴욕에서 영업하고 있는 모든 채권추심업체에게 현재까지 금융서비스부의 수사로 밝혀진 35개 대부업체의 불법적인 페이데이론을 추심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통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지난 2월, Lawsky 장관은 뉴욕의 모든 채권추심업체에게 페이데이론의 채무를 추심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부 행위는 뉴욕에서 불법이고 이렇게 해서 발생한 채무는 무효이며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페이데이론은 단기 소액 대부로, 소비자의 다음 월급날에 갚는 방식입니다. 흔히 페이데이 대부업체는 소비자의 계좌에서 이자와 금융수수료만 인출하지만, 소비자는 원금을 갚아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는 사실상 대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들은 실제로 대부금을 갚고 싶으면 페이데이 대부업체에게 연락하여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페이데이 대부업은 민사 및 형사적 고리대금 법령에 따라 뉴욕주에서 불법입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를 보면, 대부업자들은 기소를 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해줌으로써 뉴욕의 페이데이 대부에 대한 단속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페이데이 대부업은 뉴욕에서 페이데이 대부를 해주는 것과 동일하게 불법입니다.

다음 35개 대부업체는 오늘 Lawsky 장관으로부터 뉴욕 주민들에게 불법적인 페이데이론 판매를 중단하라는 통지문을 전달 받았습니다. 금융서비스부 수사를 통해 이와 같은 많은 업체들이 400, 600, 700%, 심지어 1,000%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씌우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 ABJT Funding, LLC, www.dollarpremier.com
- Advance Me Today, www.advancemetoday.com
- American Web Loans, www.americanwebloan.com
- Archer Direct, LLC, www.archerdirectservices.com
- Bayside Loans, www.baysideloans.com
- BD PDL Services, LLC, www.bottomdollarpayday.com
- Blue Sky Finance, LLC , www.extrafundscash.com
- BS Financial Group Inc., www.paydayaccelerated.com
- Cash Jar, www.cashjar.com
- Cash Yes, www.cashyes.com
- Discount Advances, www.discountadvances.com
- DMA Financial Corp., www.qloot.com
- Eastside Lenders, LLC, www.eastsidelenders.com
- Fast Cash Personal Loans, www.fast-cash-personal-loans.com
- Golden Valley Lending, www.goldenvalleylending.com
- Government Employees Credit Center, Inc., www.cashdirectexpress.com
- Great Plains Lending, LLC, www.greatplainslending.com
- Horizon Opportunities, LLC, www.paydaycashlive.com/horizon-opportunities-PAYDAY-LOAN
- Loan Point USA Online, www.loanpointusaonline.com

- MNE Services, Inc., www.ameriloan.com
- MobiLoans, LLC, www.mobiloans.com
- MyCashNow.com, Inc., www.mycashnow.com
- National Opportunities Unlimited, Inc., www.itsmypayday.com
- Northway Broker Ltd., www.myzip19.com
- PayDayMax Ltd., www.paydaymax.com
- Peak 3 Holding, LLC, www.peak.3.holdings.pay.day.loans.750cashs.com
- Plain Green, LLC, www.plaingreenloans.com
- Red Rock Tribal Lending, LLC, www.castlepayday.com
- SCS Processing, www.everestcashadvance.com
- SFS, Inc., www.oneclickcash.com
- Sonic Cash, www.soniccash.com
- Sure Advance, LLC, www.sureadvance.com
- Tribal Credit Line, www.quickcredit911.com
- United Consumer Financial Services, Inc., www.ezpaydaycash.com
- Western Sky Financial, LLC, www.westernsky.com

Lawsky 장관의 페이데이론 판매 중단 통지서 전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

2013년 8월 5일
제목: 뉴욕주민들에게 판매하는 불법 온라인 페이데이론에 대하여

뉴욕주 금융서비스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귀사 및/또는 자회사, 계열사, 대리점이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적인 페이데이론을 뉴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서신은 이러한 페이데이론이 뉴욕의 민형사상의 고리대금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통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뉴욕 금융서비스법에 따라 귀사, 자회사, 계열사, 대리점, 승계자 및 양도인은 뉴욕에서 불법적인 페이데이론을 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채권추심업체의 경우 일반채무법 § 5-511 조항에 따라 , 비은행계 대부업체가 판매하는 페이데이론을 비롯해 법정최고금리를 넘는 고리로 뉴욕에서 판매되는 대부금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강제집행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무효이고 강제집행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려는 행위는 일반상법(General Business Law) § 601(8)과 공정채권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15 U.S.C §§ 1692e(2) 및1692f(1)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뉴욕 일반채무법 § 5-501 및 뉴욕은행법 § 14-a에 따라 귀사가 연간 16%를 초과하는 이율로 250,000 달러 이하의 대부 상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상환유예를 하는 것은 민간고리대금 행위입니다. 나아가 뉴욕 형사법 §§ 190.40-42에 따라 귀사가 연간 25%를 초과하는 이율로 뉴욕에서 대부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형사상의 고리대금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일반채무법 § 5-

511에 따라 비은행계 대부업체가 판매하는 고리채는 무효이며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페이데이론으로 발생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뉴욕 일반상법 § 601(8)과 공정채권추심법 15 U.S.C. §§ 1692e(2) 및1692f(1)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귀사가 뉴욕에서 페이데이론을 판매했기 때문에 귀사는 뉴욕은행법 § 340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법은 비인가 비은행계 대부업체로 하여금 연간 16% 이상의 고리대출로 25,000 달러 미만의 소비자 대부금 판매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귀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대리점은 뉴욕에서 불법적인 페이데이론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뉴욕 소비자에게 이러한 대부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대책을 내용으로 하여 금융서비스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귀사, 자회사, 계열사, 대리점, 승계자 또는 양도인이 2013년 8월 [ ]일까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서비스부는 뉴욕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Benjamin M. Lawsky
금융서비스부 장관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